

의안번호	제21호
의 결 년 월 일	2026. 3. . (제335회)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금 산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3. 5.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제출년월일 : 2026. 3. 5.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1. 제정이유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결정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민생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1071)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073)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3567)
 - 입법예고(2026. 1. 20. ~ 2026. 2. 9.) : 제출의견 없음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민생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제4조제2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 나. 관련 조문 : 안 제6조(지급결정 등)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에서 정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함
 - 30만원×1회×49,000명 = 14,700,000천원

-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민생안정지원금	14,700,000	14,700,000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군비)

3. 작성자

경제과장 곽병국(☎ 750-30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0
민생안정지원금		14,700,000					14,7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준비		14,700,000					14,7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